

【 2016.04.28(목) 강원도민일보 】

동해 건설경기 활성화 '탄력'

북방파제 업체 선정 이어 방파호안 축조 6월 발주

속보=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축조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본지 4월22일자14면)에 이어 방파호안 축조공사도 오는 6월 발주될 예정이어서 동해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공평식)은 내달말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1·2공구) 1.7㎢ 구간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북방파제 공사는 1공구에 대림 산업이, 2공구에 포스코 건설이 각각 선정돼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총 공사비 3296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9년 완공 될 예정이다.

또 북방파제 후속사업인 방포 호안 축조공사도 오는 6월 발주를 앞두고 있다.

공사 일정은 사업비 3588억원을 투입, 방파호안 2288m, 동방파 제 150m 등을 오는 2021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일괄입찰 발주를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동해안 최대 규모인 총 사업비 6884억원에 달하는 방파호안과 북방파제 축조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면 침체된 건설경기 에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다.

동해항 3단계 공사는 20.7%대 의 선박 체선율을 해소하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5만t급 16선석

에서 10만t급 23선석으로 확장되며 하역 능력도 2200만t에서 4100만t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상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장은 "북방파제 건설업체가 선정돼 내달 말쯤 공사를 시작할 것이며 방파호안 축조공사도 오는 6월쯤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공사에 따른 해안 침체적이 억제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홍성배 sbhong@kado.net

【 2016.04.28(목) 건설경제 】

건협 윤리위원회

차기 협회장 선거 선관위 구성전까지 기능 대행

불법선거운동 등 과열 방지 위반사항 신고접수·조사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구)가 차기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선관위 기능을 대행한다.

제18대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사진)를 열고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우선 윤리위원회는 선관위가 설치되기 전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의 신고접수와 조사·확인을 담당한다. 선관위가 설치되면 즉시 관련 신고서류와 조사·확인내용 일체를 선관위에 이첩한다.

차기 회장 선거는 직전 회장 임기만료일(2017년 2월28일) 60일 전에 개최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 일(12월 말)에 치러진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40일 전(11월 중순)까지 설치돼야 한다.

선거운동 규정 위반사항을 신고하려면 불법선거운동신고서에 증거 자료를 첨부해 내방 또는 우편으로 선관위에 신고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신고자의 이름을 기명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의해 제한된다.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둘째,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다.

셋째, 재산상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넷째, 건설협회의 사교·친목모임에서 통상적인 객출이나 순번에 의한 경비 부담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부담 행위다.

다섯째, 방송·신문·잡지,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다.

여섯째, 선거인으로 구성된 단체·조직 등의 운영비나 행사비 등을 찬조하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다.

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운동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고, 시정지시, 등록취소, 당선무효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시정지시는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결의하면 이뤄진다. 등록취소·당선무효는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결의하면 결정된다.

김중구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과열 방지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